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병력(病歷)
조회 요청 근거 마련 〉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916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 옥 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병력(病歷) 조회 요청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8.

다.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정신질환 등 건강상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가 건강진단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적 공간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는 돌봄의 질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됨.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뢰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6조의2).

Ⅲ. 검토의견

1.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병력(病歷) 조회 요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병력 등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u>범죄경력조회</u>)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u>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u>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u>개인정보 조회</u>) ① ----- ----- ----- ----- ----- ----- ----- <u>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병력(病歷) 등 개인정보 조회를</u> -----.
② 제1항에 따라 <u>범죄경력조회</u> 를 요청받은 <u>수사기관의 장</u>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u>개인정보 조회</u> 를----- ----- <u>관계기관의 장</u> 은----- -----.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관계기관의 범위, 개인정보의 내용, 회신방법 등 그 밖에 개인정보의 조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¹⁾ 제6조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6조의2²⁾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0조의2³⁾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⁴⁾에 따라 아이

1)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보미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돌보미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 검사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⁵⁾의 검사항목임.

또한,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채용신체검사서에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환, 정신질환, 마약·대마

②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건강검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으로 한다.

③ 아이돌보미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아이돌보미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아이돌보미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결핵

2. 간염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정하여 고시한 질병

5)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제5조(검사항목) ① 일반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3.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4. 구강검진

5.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인지기능장애 검사

7. B형간염 검사

8.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9.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10.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1.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어 해당 질병에 관한 확인이 가능하나, 건강진단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통하여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의 정신질환 병력 여부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病歷)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사항에 병력(病歷)을 추가하고, 요청 대상기관을 병력 확인이 가능한 관계 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마약 중독, 정신질환 등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아이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력(病歷)에 대한 의학적 정의를 살펴보면, 환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과거의 환경이나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과거의 질환, 손상력, 치료 이력 뿐만 아니라 가족의 병력, 흡연, 음주 등의 의학적 사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⁶⁾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의 병력까지 조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아이돌보미로 선발되기 위해 제출하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환,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건강에 관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의 수집범위는 수집목적

6) 출처: 알기쉬운의학용어, 서울아산병원

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7)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어린이집 근무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도 정신질환자, 마약류에 중독된 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제51조의3)⁸⁾ 규정에는 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에서 병력 등의 사항은 건강 진단을 통해 확인·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병력 등 개인정보’의 범위와 ‘관계기관의 장’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7)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8)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시·도지사 등이 자의적으로 병력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649
